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일반 접종의무에 관한 헌법적 논의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은

Ⅰ. 들어가는 말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병원, 요양원 등 의료·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Grüne),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으로 구성된 현 독일 연립정부가 추진한 이 법률안은 상기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되거나, 백신 접종 금지사유(Kontraindikation)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찬성 569표, 반대 79표, 기권 38표로 가결되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 그리고 지난 3월 초 연방의회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무에 대한 논의는 마찬가지로 연립정부의 주도하에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접종의무(allgemeine Impfpflicht)'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연립정부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존재하였고, 사회민주당의 부대표 디르크 비제(Dirk Wiese)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의원그룹이 2022년 10월부터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무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Impfprävention gegen COVID-19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im Zusammenhang mit der COVID-19-Pandemie, BT-Drs. 20/188, 06.12.2021.

2) Deutscher Bundestag, Impfpflicht für Gesundheits- und Pflegepersonal ab 15. März beschlossen, 10.12.2021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49-de-infektionsschutzgesetz-impfpraevention-870424, 최종검색일: 2022. 4. 11.).

제출한 반면,[3] 자유민주당의 보건전문위원 앤드루 울만(Andrew Ullmann)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의원그룹은 2022년 9월의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의무의 도입을 제안하였다.[4] 그러나 전자의 법률안을 지지한 의원은 237명, 후자의 법률안을 지지한 의원은 45명으로 모두 연방의회 의원수의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또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의 의원들 중에도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양 의원그룹은 법률안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타협안(Kompromissvorschlag)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은 2022년 4월 5일 백신 접종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타협안에 합의하였으나, 이틀 후 부쳐진 연방의회 표결에서 이 타협안은 찬성 296명, 반대 378명, 기권 9명의 결과로 가결되지 못했다.[5]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의 실패를 두고 현재 독일 사회 내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을 추진한 연립정부와 총리 울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에 대한 비난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의회의 부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7%에 해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연일 여론이 들끓고 있다.[6] 이는 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로 인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사회에서 중대하게 다뤄진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지 관련 쟁점을 제시

3) Entwurf eines Gesetzes zur Aufklärung, Beratung und Impfung aller Volljährigen gegen SARS-CoV-2 (SARSCoVImpfG), BT-Drs. 20/899, 03.03.2022.

4)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einer verpflichtenden Impfberatung für Erwachsene und einer altersbezogenen Impfpflicht ab 50 Jahren unter Vorbehalt gegen das Coronavirus SARS-CoV-2, BT-Drs. 20/954, 10.03.2022.

5) Deutscher Bundestag, Initiativen zur Corona-Impfpflicht fallen im Bundestag durch, 07.04.2022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14-de-impfpflicht-886566, 최종검색일: 2022. 4. 11.).

6) Augsburger Allgemeine, Mehrheit der Deutschen bedauert Scheitern der Impfpflicht ab 60, 11.04.2022(https://www.augsburger-allgemeine.de/special/bayern-monitor/impfpflicht-umfrage-mehrheit-der-deutschen-bedauert-scheitern-id62323996.html, 최종검색일: 2022. 4. 11.).

하고, 특히 신체의 불훼손권 제한의 비례성 판단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진 1: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7]

Ⅱ. 관련 기본권에 관한 논의

1. 신체 불훼손권의 제한과 비례성 심사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관련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신체 불훼손권(körperliche Unversehrtheit)’이다. 같은 항 제3문[8]은 법률유보에 의한 신체 불훼손권의 제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제한의 정당성 여부, 즉 비례성 판단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례성의 심사와

7) 사진 출처: tagesschau, Zahlreiche Proteste gegen Corona-Politik, 18.12.2021(https://www.tagesschau.de/inland/demos-corona-massnahmen-103.html, 최종검색일: 2022. 4. 11.).
8)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 접종의무의 필요성(Erforderlichkeit), 특히 균형성(Angemessenheit)에 대한 판단이다.

(1) 정당성과 적합성

일반 접종의무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정당한지(legitim)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일반의 건강 보호와 특히 의료시스템의 과부하 방지라는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목적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9]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geeignet) 수단이라는 점에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독일의 감염병 연구소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Institut, RKI)'의 '상임 예방접종위원회(Ständige Impfkommission, STIKO)'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수단으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을 낮출 뿐 아니라 감염 후 심각한 질병을 앓을 가능성 또한 낮춰줄 수 있다.[10] 나아가, 일반 접종의무 도입의 적합성은 독일 전체의 접종률과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2021년 말에 이미 인구의 약 70%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이후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11] 접종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접종의무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12]

한편, 일반 접종의무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 즉 국민들의 의무 이행을 실

---

9) Ute Sacksofsky, Allgemeine Impfpflicht – ein kleiner Piks, ein große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Verfassungsblog, 21.01.2022, S. 1 (https://verfassungsblog.de/allgemeine-impfpflicht-ein-kleiner-piks-ein-groses-verfassungsrechtliches-problem/, 최종검색일: 2022. 4. 11.).

10) RKI, COVID-19-Impfempfehlung, 31.03.2022(https://www.rki.de/SharedDocs/FAQ/COVID-Impfen/FAQ_Liste_STIKO_Empfehlungen.html, 최종검색일: 2022. 4. 19.).

11) 2021년 말에 2차 접종률이 70%에 달했음에도 2022년 1월에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 수가 보고되었고, 3월 17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인 약 30만 명의 일일 확진자 수가 보고되었다. 현재에도 독일에서는 거의 매일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78220a4c454480e823b17327b2bf1d4/page/Bundesl%C3%A4nder/, 최종검색일: 2022. 4. 12.). 한편, 2022년 4월 12일 기준 독일의 1차 접종률은 76.6%, 2차 접종률은 76.1%, 3차 접종률은 59%에 달한다(https://impfdashboard.de/, 최종검색일: 2022. 4. 12.).

12)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1.

질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불이행 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13] 이러한 의견은 일반 접종의무의 적합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14] 즉,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법적 의무를 도외시할 가능성이 있고 접종의무를 이행하는 자들과 접종거부자들 간의 평등(Gleichheit)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은 적합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평가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법적 의무가 도입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시설 과부하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 접종의무의 적합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평가라는 것이다.

(2) 필요성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이 필요한지(erforderlich) 여부, 즉 더 완화된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모임 금지 및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접촉 제한, 외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중단, 식당·상점 등의 영업 제한 등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감염병 예방조치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 접종의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5] 상기한 조치들은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일반 접종의무보다 더 완화된 조치에 해당하나,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시설의 과부하 방지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각

---

13) Susanne Gstöttner, Das österreichische Impfpflichtgesetz: Ein anpassungsfähiger Rahmen für die allgemeine Impfpflicht, Verfassungsblog, 02.02.2022, S. 5(https://verfassungsblog.de/das-osterreichische-impfpflichtgesetz/, 최종검색일: 2022. 4. 11.).

14) Ute Sacksofsky, Allgemeine Impfpflicht – ein kleiner Piks, ein große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Verfassungsblog, 21.01.2022, S. 1 (https://verfassungsblog.de/allgemeine-impfpflicht-ein-kleiner-piks-ein-groses-verfassungsrechtliches-problem/, 최종검색일: 2022. 4. 11.).

15)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3.

의 조치들이 그 적용 대상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등의 특정 그룹 및 경제 상황 등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쳤기 때문에[16] 여러 측면에서 부적합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접종권고(Impfempfehlung)라는 완화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접종권고는 자발성(Freiwilligkeit)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역시 감염병 예방에 부적합한 조치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7] 이러한 의견들은 비록 앞서 언급된 일반 접종의무 외의 감염병 예방조치들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조치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들에 대해 이미 적합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과 비교하여 적합성이 인정되는 조치인 일반 접종의무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시설의 과부하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적합성이 인정되는 조치인 일반 접종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접종의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18] 특히 이러한 의견 중에는 현재 승인되어 판매 중인 항바이러스성 경구용 치료제들의 활발한 상용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치료제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일반 접종의무의 필요성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19]

---

16)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특히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함부르크-에펜도르프(Hamburg-Eppendorf) 대학병원은 2021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100명 이상의 어린이·청소년과 1,600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등교 중단, 자가격리 경험 등으로 인한 주관적 스트레스(Belastung)를 묻는 항목과 관련해 '극심한(äußerst)' 또는 '상당한(ziemlich)' 수준이라고 답한 어린이·청소년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piegel, Acht von zehn Kindern fühlen sich in der Pandemie belastet, 09.02.2022, https://www.spiegel.de/gesundheit/copsy-studie-des-uke-hamburg-acht-von-zehn-kindern-fuehlen-sich-in-der-pandemie-belastet-a-f05aa15e-0217-4f3e-a690-48dd41348b32, 최종검색일: 2022. 4. 19.).

17) Oliver Pieper/Constanze Schwager-Wehming, Impfpflichten zur Bekämpfung von Masern- und COVID-19-Viren auf dem verfassungsrechtlichen Prüfstand, DÖV 2021, 287 (292).

18) Stephan Rixen, Rechtmäßigkeit und Semantik der Impfpflicht: Zur aktuellen Diskussion über eine Pflicht zur COVID-19-Impfung, Verfassungsblog, 28.07.2021, S. 3(https://verfassungsblog.de/rechtmaessigkeit-und-semantik-der-impfpflicht/, 최종검색일: 2022. 4. 12.); Thorsten Kingreen, Whatever it takes II? Der Gesetzentwurf zur Impfpflicht ab 18, Verfassungsblog, 15.02.2022, S. 4(https://verfassungsblog.de/whatever-it-takes-ii/, 최종검색일: 2022. 4. 12.).

19) Thorsten Kingreen, Whatever it takes II? Der Gesetzentwurf zur Impfpflicht ab 18, Verfassungsblog, 15.02.2022, S. 4(https://verfassungsblog.de/whatever-it-takes-ii/, 최종검색일: 2022. 4. 12.).

(3) 균형성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이 비례적인지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에 관한 판단은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밝혀진 모든 질병·감염·접종 관련 위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20]

일반 접종의무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의견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접종 반응과 부작용들에 근거하여 백신 접종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21] 더욱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른 감염병 백신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단기간에 개발되었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바로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은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22]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단기간 지속될 뿐이고 변이바이러스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점차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접종의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23]

이에 반해 일반 접종의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욱 크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백신 허가청(Zulassungsbehörde)과 상임 예방접종위원회에 의해 지금까지 잘 감시되어 왔으며 밝혀진 부작용 또한 경미한 편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접종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중증질환들, 그 중에서도 노인들과 기저 질환자들의 중증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평

---

20)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4.
21)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5.
22) Ulrich Vosgerau, Stellungnahme zum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FDP: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Impfprävention gegen COVID-19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im Zusammenhang mit der COVID-19-Pandemie“, BT-Drs. 20/188, 07.12.2021.
23) Ute Sacksofsky, Allgemeine Impfpflicht – ein kleiner Piks, ein große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Verfassungsblog, 21.01.2022, S. 4 (https://verfassungsblog.de/allgemeine-impfpflicht-ein-kleiner-piks-ein-grosses-verfassungsrechtliches-problem/, 최종검색일: 2022. 4. 11.).

가하면서, 이에 따라 사망자 수 또한 현저히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한다.[24] 나아가, 집단감염 발생 사례들과 코로나19 감염 후 2개월 이상 후유증이 지속되는 '롱코비드(Long-COVID)' 증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을 통해 최대한 감염률을 낮출 경우 이러한 집단감염과 롱코비드 증상들을 방지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한다.[25]

2. 인간존엄성의 위반 여부

일부에서는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한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존엄성 보장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6] 이 의견은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접종의무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의학적 인간실험(medizinisches Humanexperiment)"과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은 공권력이 인간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을 단순 객체(bloßes Objekt)로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은 그러한 평가절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7] 이러한 의견은 백신의 장기 부작용에 대해 항시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 허가절차 자체가 엄격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이 인간실험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

24)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6.
2022년 4월 12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독일의 사망자 수는 132,017명에 달한다(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78220a4c454480e823b17327b2bf1d4/page/Landkreise/, 최종검색일: 2022. 4. 12.).

25)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6.

26) Murswiek, Freiheitsbeschränkungen für Ungeimpfte,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indirekten COVID-19-Impfzwangs, Rechtsgutachten im Auftrag der Initiative freie Impfentscheidung e.V., 04.10.2021, Rn. 362 ff.

27)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8.

3. 평등의 원칙 보장

기본법 제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평등대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평등권의 보장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28] 즉, 특별한 접종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감염 후 회복되어 이미 면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접종의무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건강 보호에 역효과를 낳고 이는 일반 접종의무 도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의무의 예외 규정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29]

Ⅲ. 나가는 말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 도입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몇 달간 독일 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백신 접종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시행했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성과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한 달 만에 일반 접종의무의 시행을 중지한 바 있는데,[30]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실패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적·법적 분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절충안조차 통과되지 못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독일 국민들의 과반은 일반 접종의

28) Deutscher Bundestag, Allgemeine COVID-19-Impfpflicht, WD 3 - 3000 - 203/21, S. 19.
29) Michaela Hailbronner/Lisa-Marie Lührs/Leon Züllig,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Impfpflicht: Plädoyer für eine prozedurale Perspektive, Verfassungsblog, 05.12.2021, S. 4(https://verfassungsblog.de/verfassungsmasigkeit-einer-impfpflicht/, 최종검색일: 2022. 4. 12.).
30) tagesschau, Österreich setzt Corona-Impfpflicht aus, 09.03.2022 (https://www.tagesschau.de/ausland/europa/oesterreich-impfpflicht-111.html, 최종검색일: 2022. 4. 12.).

무 도입이 좌절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높은 헌법적 가치가 인정되는 신체 불훼손권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최신 의학적 지식, 현재의 감염병 확산 상황, 사망자 수, 새로운 완화 수단의 발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또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일이 아니라 의학, 법학 등 학문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접종의무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들 또한 반드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접종의무를 통해 침해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의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감염병 학자들이 올가을 독일의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31] 앞으로 독일에서 일반 접종의무 외에 어떠한 감염병 예방조치들이 논의될 것인지 주목된다.

31) LTO, Scholz schließt neuen Anlauf zu Corona-Impfpflicht aus, 08.04.2022(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corona-impfpflicht-bundestag-bundeskanzler-scholz-lauterbach/, 최종검색일: 2022. 4. 12.).